

KINU 정책제안서 12-02

##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 정책제안서(12-02)

인쇄 2012년 11월 발행 2012년 1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인권연구센터 기획·디자인 인쇄처 두일디자인(2285-0936)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900-4300(대표) 901-2528(직통)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통일연구원, 2012

비매품

# 정책제안서

##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연구책임자: 김수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금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국신(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홍 민(동국대학교 연구교수)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1. 배경 및 문제점 .....	1
2. 주요 연구결과 .....	2
가.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틀 .....	2
나. 북한부패의 요인 .....	5
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부패 실태 .....	8
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부패 실태 .....	14
마.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평가 .....	20
3. 정책제언 .....	23
4. 기대효과 .....	25



## 1. 배경 및 문제점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배급체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일반주민에 대한 배급은 사실상 중단되거나 일부 기업소를 통한 배급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하위 엘리트들도 국가가 정상적으로 배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난의 행군을 거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는 계획경제가 기형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시장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불법적이고 비사회주의적인 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고위층 엘리트로부터 중하위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 활동을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 부를 축적하려는 부패행위가 북한사회 내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북한 내 심각한 부패상황은 국제사회의 평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라는 척도를 통해 전세계의 부패상황을 평가하여 왔다. 북한은 그동안 부패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 수집 등의 사유로 ‘부패인식지수’ 산정 대상국가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런데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는 처음으로 북한을 대상에 포함시켜 부패상황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2011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전체 183개국 가운데 소말리아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받았다.

이렇게 북한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부패는 다층적으로 북한주민의 생계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장마당 등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하부 단위에서의 부패현상은 북한주민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러한 부패현상이 사회변화와 구조적 연관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2003년 10월 31일 유엔에서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을 주목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와 국제투명성기구는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패와 인권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북한의 부패현상에 주목하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지만 부패현상이 북한주민의 삶, 특히

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북한의 부패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북한 부패와 북한주민의 인권의 상관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북한의 부패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11)를 들 수 있다. 동 보고서의 북한 관련 보고서 중 ‘Section 4’(공적 부패와 정부 투명성, Official Corruption and Government Transparency)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북한부패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도 2009년부터 『북한인권백서』에서 ‘부패와 인권’이라는 독립적인 소절을 새롭게 설정하고 부패와 인권을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의 부패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에 만연해 있는 부패의 실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부패행위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결과

### 가.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틀

부패란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국가의 법 또는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부정·비리·권력남용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적 이익(private gain)을 추구하기 위해 부여받은 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이덴하이머(Arnold J. Heidenheimer)는 다양한 부패개념에 대해 공직중심·시장중심·공익중심 3가지로 부패개념을 분류하여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시각의 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 중 본 과제에서는 주로 공직 중심 시각에서 북한부패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형화하고 있는가? 부패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패행위의 유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2003년 10월 31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반부패협약을 중심으로 부패행위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첫째, 뇌물수수(bribery, 제15조, 제16조) 행위이다. 둘째, 공금 횡령(embezzlement, 제17조)이다.

셋째, 영향력 행사에 의한 거래(trading in influence, 제18조)이다. 넷째, 직권 남용(abuse of functions, 제19조)이다. 다섯째, 부정축재(illicit enrichment, 제20조)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반부패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도 형법과 행정 처벌법에서 부패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형법과 행정 처벌법에 규정된 부패 관련 조항을 통해 북한당국이 부패행위로 적시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뇌물, 횡령, 직권남용을 부패행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부패가 북한사회, 특히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통하여 추구하는 동기(목적)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집단주의 이념과 생산의 국유화로 인해 관료들이 부패행위를 통하여 추구하는 동기가 자본주의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패의 동기(이익의 영역)라는 기준에서 조직과 개인이라는 부패 수혜의 대상, 경제적 성격 여부라는 2가지 기준으로 북한의 관료 부패를 분석하는 틀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고난의 행군 이후 부패를 통한 이익의 추구라는 동기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조직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조직소속 근로자의 생계,’ 즉 배급의 제공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행위도 ‘조직이익+개인이익’의 결합이라는 형태를 띠는 점에서 사적 이익의 취득이라는 부패 일반론과 달리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 장사, 개인부업 등 사적 부문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통제 엘리트들의 인민들에 대한 통제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관료들은 시장 활성화를 활용하여 공적 권한을 행사하여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친화형 부패행위’가 보다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관료부패의 특징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은 ‘생계유지형 부패’가 특징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는 ‘생계유지형 부패’와 ‘시장친화형 부패’의 공존구조에서 점차 ‘시장친화형 부패’가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인권정책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는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패와 인권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은 2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부패현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이다. 둘째, 인권은 부패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권상황이 열악한 사회에서는 부패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 북한인권 상황은 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적 접근이 반부패운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부패와

인권의 2가지 상관성 중 북한의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패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는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해 3가지 인과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부패가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direct violations)으로 작용하는 상관관계이다. 둘째, 부패가 인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indirect violations)으로 작용하는 상관관계이다.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부패는 인권침해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패가 직접적 침해요인은 아니지만 부패행위로부터 유발되는 특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 경우 부패행위는 궁극적으로 권리의 침해로 연결되는 행위에 기여하는 근본요소가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부패가 원격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remote violations)으로 작용하는 상관관계이다. 이 경우 부패는 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부패는 보다 원격적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와 인권침해와의 인과적 연계를 실질적으로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부패행위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국가의무를 제약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인권에 대한 3가지 차원의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는 인권을 존중(respect)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국가는 인권을 보호(protect)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국가가 제3자(사회의 구성원들, 개인 혹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의무를 의미한다. 셋째, 국가는 인권을 이행(fulfil)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관할권 내의 주민들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인권침해는 국가가 이러한 3가지 수준의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부패는 3가지 국가의 의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인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연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부패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패는 사회권을 ‘점진적으로’(progressively)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저해하게 된다. 또한 부패는 가용성(avail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부패행위는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기구들은 부패가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협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강력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인권의 존중을 지향하고 ‘부적절한 거버넌스’(bad governance)는 반대의 결과(인권의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 부패가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낳고 ‘부적절한 거버넌스’가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상관성과 관련하여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패는 이러한 인권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게 저해함으로써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핵심 인권원칙으로 평등(기회균등), 비차별을 들 수 있다. 부패는 접근, 비차별, 기회 등의 핵심 인권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부패와 차별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부패는 특히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부패는 취약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특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취약집단과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같이 부패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 나. 북한부패의 요인

북한 내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요인으로 수령 중심의 일인지배체제, 조선노동당 중심의 국가체제에 따른 권력의 독점과 집중에 따른 권력의 부패개입 가능성과 이러한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에 따른 부패개입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배급체제의 기형적 작동과 시장의 확산, 자체적 생존모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요소의 확대로 인해 부패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속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장경제는 국가, 관료, 인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핵심요인이 되었다. 국가, 관료, 인민 사이에는 시장과 ‘생존’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교환관계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자신의 생존과 이해를 위해 서로가 공존하는 ‘게임의 규칙’이 형성되었다. 이는

법적·제도적 원칙을 이탈하거나 벗어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의 빈곤과 왜곡, 계획 전반의 파행을 봉합하기 위한 다양한 비공식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기형적 계획경제 아래 형성된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는 고난의 행군 이후 자원의 절대적 부족과 연계되면서 조직의 운영을 위한 부패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구조가 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이에 대응하는 비공식적 관계와 부패관행을 유발하는 연결망이 구성되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사회에 국가이익보다는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조직(기관, 지역, 가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상이 만연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난으로 계획경제가 기형적으로 작동되면서 개인과 조직이익이 결합되는 부패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관·조직을 위한 행위도 있지만 개인적 이해를 추구하는 부패관행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익과 조직이익이 결합되는 부패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내에서 조직이익과 개인이익이 결합된 부패행위가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정치자본’이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자본은 사적인 소유가 금지된 사회에서 공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점유·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자본은 기형적 계획경제의 작동과 맞물릴 때 부패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특히 관료들 간에 불확실한 계획경제의 현실을 공감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는 관료적 ‘이타주의’와 자신의 생존과 자기보존을 위한 ‘보상’이라는 인식을 낳게 한다. 이러한 인식이 부패행위 자체에 대한 불감증을 낳고 부패행위가 만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약탈과 기생, 부패 고리는 경제 전반의 물질적 재분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생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주민들의 시장 활동에 관료들이 약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생존권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 및 계층화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시장 활동에 머물고 있는 반면,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활용하여 부를 챙기고, 이와 결합된 돈주와 같은 거물장사꾼들 역시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패행위는 평등과 비차별 원칙을 위배하는 동시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실행의무를 저해하게 된다. 특히 일반주민의 사회권에 충당되어야 할

자원의 가용성을 떨어뜨리고 일반주민들의 경제적·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에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은 주로 시장세력과 공적 지위의 연계, 공생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볼 수 있다. 시장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시장세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탁 방식에 따라 부패행위의 개입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상층에는 당·정·군 기관들의 외화별이사업 회사들이 있다. 둘째, 이들 당·정·군 기관의 회사 밑에 소속되어 자금과 인원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무역 활동을 하는 ‘돈주들이 있다. 셋째, 도당, 시·군당 및 인민위원회, 보안서 등 지역 권력기관들과 현장 일꾼들이다. 넷째, 생계차원에서 시장활동을 하는 대다수 주민들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장결탁 방식은 권력과 후견 아래 외화별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뇌물, 횡령 등 부패행위가 개입하는데, 이러한 부패행위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강화시키고 투명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북한주민의 전반적 인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부패행위로 인해 한정된 자원이 특정 소수 특권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북한주민들의 사회권 향유를 위한 자원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시장결탁 방식은 주로 개인 대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원칙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뇌물수수자, 뇌물제공자 모두 뇌물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의 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합리적 현상에 대한 부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인권인식이 형성되는 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비사회주의 행위가 확산되면서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오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식규범에 위배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다양한 통제인력들의 부패 개입 영역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형법과 인민보안단속법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실제 처벌의 정도는 개인의 신분 및 배경에 따라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단속기관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의 내용이 사회적 교양에서부터 노동단련, 무보수노동, 노동단련형, 교화형, 사형까지 매우 큰 편차를 보

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과정과 처벌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속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부패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뇌물수수 등 부패현상을 저지하기 위해 처벌규정들을 두고 있다. 형법은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중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와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들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벌법을 통해서도 횡령, 직권남용, 뇌물죄 등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의 기형적 작동, 시장의 확산, 통제기제의 강화라는 구조적 요인 속에서 부패행위는 감소되기보다 오히려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내에서 부패행위가 확산되면 이를 통제하는 기관의 위상과 그 기관 내 부서별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난 이후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법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법기관의 역할확대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단속 회피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뇌물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부패 실태

### (1) 법 앞에 평등할 권리

사건이 재판에 송치되기 전에 부패행위가 발생할 때 부패는 사법정의 실현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의 경우 단속 목적이 ‘비사회주의 현상’을 적발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안원들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임의로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특별한 죄책감이나 처벌 없이 보안원들은 개인의 착복을 위한 뇌물수수의 수단으로 단속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파악되는 부패행위는 보안기관원이 단속 후 뇌물을 받고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일차적으로 비사회주의 행위가 단속되더라도 뇌물을 주고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문건을 작성하지 않는 행태들이 파악되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 등에 근거하여 단속하는 ‘비사회주의 행위’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지역의 노동단련대에 보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속원들이 개인적으로 물품이나 현금을 받고 노동단련대에 가는 처벌을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건이 성립되어 조사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제받거나 형기

를 단축하고자 시도하는 부패행위이다. 조사단계에서 뇌물을 주고 비판서를 작성한 후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도 재판이전, 특히 예심과정에서 예심원들이 돈을 받고 적용할 형기를 낮추어 주는 부패형태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예심원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예심원들은 이와 같이 사건 조작 방식 이외에도 아예 사건을 송치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2단계에서 발생하는 부패형태는 뇌물 공여 여부에 따라 사건의 성립 여부 또는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처리된다는 점에서도 다른 개인의 안보권과 공평성의 원칙을 침해하게 된다.

재판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패행위는 우호적 판결과 보석 혹은 집행유예를 획득하기 위해 판사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이다. 즉 재판과정에서 처벌을 면제받거나 형기를 단축하기 위해 판사에게 뇌물을 바치는 부패행위이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판사에게 돈을 주는 부패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북한 형법 제51조(집행유예 적용 조건과 기간)에서 집행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뇌물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언도받은 사례가 다수 파악되고 있다. 2007년 증언자의 부인이 밀수건으로 인해 노동교화형 4년 6개월을 언도받고 교화소에 가야 했으나 뇌물을 주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과정에서 판사와 변호사에게 뇌물을 주고 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패행위 형태이다. 증언자는 2010년 CD-R 유포 행위로 후창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교화형에 처해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판사와 변호사에게 뇌물을 주어 자살을 기도하도록 각본을 짰고 결과적으로 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뇌물을 줌으로써, 예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들도 다수 파악된다. 증언자는 녹화물문제로 2006년 헤산시 인민재판소에서 교화 3년을 언도 받았으나 시 보안서를 통해 변호사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변호사가 “나이가 어려 다시 고려해보자”고 변호하였고 20분 토론 이후 노동단련형 1년으로 감형되었다. 뇌물을 통한 부패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고 형기가 감축되는 결과를 낳지만 뇌물을 주지 못할 경우 불균등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한 법의 보호 권리, 특히 비차별의 원칙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공평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형 집행단계에서의 가장 보편적인 부패형태는 재판 이후 허약 등 질병을 이유

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병보석으로 석방하거나 혹은 모범적 수감을 근거로 형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형기 단축의 경우 생활을 모범적으로 할 경우 해당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원의 자의적 판단이 게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의 동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형집행 면제는 형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미 받은 형기를 단축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부패행태를 들 수 있다. 형기 단축의 경우 생활을 모범적으로 할 경우 해당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원의 자의적 판단이 게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의 동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형집행 면제는 형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북한 형법 제54조(형기단축 및 만기 전 석방)에서 형기를 단축하거나 만기전에 석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형 집행단계에서 뇌물을 줌으로써 좀 더 나은 여건에서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동단련대의 수감자가 대열지도원에게 월 1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집에서 생활하다가 15일에 한 번 정도 노동단련대에 나가 얼굴을 비치는 것으로 6개월 형기를 마친 경우도 파악된다.

## (2) 부패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존중권

표현의 자유는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며,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모든 종류의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에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 혹은 모든 종류의 매체를 통해 정보나 의견을 구하거나 받을 자유가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현대 정보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도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반논평 16’은 사생활, 가족, 가정 및 통신의 존중권과 명예와 명성을 보호할 권리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의 개입은 법률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정보 유통이 체제와 정권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여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려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 휴대전화, 영상물 등을 통해 외부 정보에 접하는 비사회주의 행위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사회주의 행위의 단속에 대해 표현

의 자유 및 사생활 존중권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속권한을 가진 보안원 등 단속원은 단속을 활용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고 일반주민들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단속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북한의 휴대전화(북한에서는 손전화)는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중국의 휴대전화와 북한당국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북한의 휴대전화 등 2종류가 있다. 중국 휴대전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휴대전화를 통해 중국이나 심지어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밀수·밀매, 도강중개, 송금중개 등을 위해서 중국사업자와 통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휴대전화 사용은 북한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다. 북한 내 휴대전화는 외국 통화가 차단되기 때문에 외부연락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으나, 음악 혹은 영상물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탐지기를 소지한 단속원들에게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기는 압수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신매매(도강중개), 한국 등과의 연락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데,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와의 거래로 돈을 갖고 있는 층이므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뇌물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 휴대전화에 남한 노래나 영상물을 담아 두었다가 단속에 걸려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중북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등 외부의 영상물들이 복사되어 유통되는 현상들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CD-R, USB 등을 볼 수 있는 중국산 전자제품들이 중고 혹은 저가로 대량 보급되면서, 외부 영상물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접근이 이전보다 쉽게 되었다.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 외국영상물보다 이해가 쉽다는 점에서, 남한영상물은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훨씬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 드라마 등 영상물의 유통과 시청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비사회주의 그룹빠’ 혹은 ‘특별상무조직’ 등을 통해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속되면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외부영상물 단순시청자와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차이를 보이며, 대규모 유통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뇌물의 액수도 이를 반영하게 된다. 또한 영상물 유통에 관여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위안화 혹은 미국 달러 등 외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뇌물도 외화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휴대전화나 영상물 시청은 다른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본인 자체의 처벌문제로 국한된다. 따라서 뇌물 제공 여부에 따라 처벌의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대부분 시민적·정치적 권리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와 마찬가지로 투명성과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것을 저해한다. 아울러 단속원과 주민 모두 권리인식과 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3) 부패와 이동 및 거주이전의 권리

북한은 여행증 제도를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여행질서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행증과 여행질서에 대한 제재는 업무와 질서를 단속하는 주체의 부패행위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여행질서와 이동은 경제난 이후 생존을 위한 유동이 주류라는 점에서 이동의 허가 유무는 생계, 특히 식량에 대한 경제적 접근능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식 행정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증 발급과 관련된 인민위원회 2부의 담당자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선호부서가 되었다. 일부는 여행증을 발급받으려면 어차피 관련부서에 뇌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행증 없이 기차 승무원과 단속원에게 돈을 내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특히 도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여행증 발급 비용이나 뇌물이 비슷하므로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으려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여행증 발급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무원출장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소수만 여행증을 신청할 뿐 거의 여행증 없이 돈을 내고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행증 관련 뇌물의 규모는 일반지역, 국경연선지역, 평양 등 방문지에 대한 여행증 발급의 엄격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행증 이외에도 기차표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일반주민들은 뇌물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반인이 중개인이나 관련실무자에게 뇌물을 주고 출장 여행증명서나 군부대가족출장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기도 한다.

북한사회에서 외국 근무 등을 위해 공무여권이 발급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며, 가장 일반적인 국외여행 허가는 중국에 친척을 두고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기 위한 여권, 단기 무역거래 등을 위한 국경통행증 발급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친척을 둔 북한주민은 친척의 초청장이 있으면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허가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권이나 국경통행증 발급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주민

들은 중국과 연계를 통해 장사를 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 친척이 있어 초청장을 받더라도 중국을 방문한 이후 기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여권을 발급받기 쉽지 않으므로 이 과정에서 뇌물이 통용되고 있다. 또 다른 뇌물의 형태는 중국 등 해외파견 근로자로 나가기 위한 뇌물이다.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인의 임금 수준이 상당히 상향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북한인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 가기 위해 뇌물이 필요하다. 뇌물을 안 주면 북한에서 중국에 근로자로 파견될 수 없다. 근로자로 중국에 파견되기 위해 3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못 주면 후불제도 통용된다고 한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한 행정처리 중 하나의 뇌물 고리가 입사증과 같은 문서를 조작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택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같은 시군지역의 경우 주택을 음성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적 금지와 음성적 거래라는 현상 속에서 공식적 행정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 뇌물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다.

#### (4) 부패와 비차별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8’은 비차별(Non-discrimination)이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토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뇌물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일본 식민지 시대 순사경험이 있는 가족의 경우 관련활동 미해명 처리, 탈북자는 사망처리, 범법자 취소처리 등의 문건조작은 담당보안원에게 뇌물을 주고 해결할 수도 있다. 뇌물공여를 통해 성분문건을 조작하는 행태는 성분에 근거한 차별이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차별의 근거를 부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당기관, 사법기관 등에 대한 진입은 토대가 나쁜 사람들에게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분 문건조작이 인권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 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부패 실태

### (1) 부패와 근로권

북한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자신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과 계획에 따라 직업이 배정되는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의 배치와 이동의 권한을 가진 일꾼들이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부패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경제난 이후 직업의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선호도의 변화는 직장 배치에 따른 부패행위로 연결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소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좋은 직장에 배치 받으려는 주민의 노력과 배치권한을 행사하는 관료의 부패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 직장 배치 및 이동과 동시에 북한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외화벌이 사업에 선발되는 것은 다른 일반 직장 배치보다 개인적 부의 축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차원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등에 파견되기 위해 뇌물이 성행하고 있다. 직장 배치 및 이동과 관련되어 부패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직장이탈’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지하듯이 ‘8·3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공장에 일정 정도의 현금만 바치면 출근의 의무를 면제받는 ‘8·3 노동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직장 배치를 위한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뇌물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영역은 문건의 조작과 입당이 대표적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뇌물 등을 통해 문건을 조작하려는 부패행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미한 수준의 문건은 뇌물을 통해 조작하는 부패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분 자체를 변경할 정도로 문건 조작 행위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당 중심의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당원 여부는 북한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배정받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난 이후 입당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지만 여전히 당-국가체제 아래서 입당은 북한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특히 부패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에 개입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은 생존과 부의 축적과 직결되면서 뇌물을 주고 입당하려는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뇌물은 직위의 유지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이는 직위를 활용한 부

패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뇌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과 직위에 있기 위해서는 상납구조가 일상화되고 있다. ‘직위를 이용한 뇌물수수 → 직위 유지를 위한 뇌물의 상납’이라는 연쇄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제도적으로 강제노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영역이 학생들에 대한 노력동원과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에서의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노력동원은 강제노동인 동시에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뇌물 제공 등을 통하여 노력동원에서 제외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구금시설에서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들 수 있다. 노동단련대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적 영역의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단련대는 건설 동원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연관되어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노동단련대를 통해 노동 수요를 충족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영역이 아니라 노동단련대 관리 지도원과 사적 영역이 결탁된 노력에 동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는 노동을 통하여 교양을 한다는 북한당국의 교정방침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강제노동이라는 인권유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2) 부패와 식량권

식량권과 관련한 부패행위는 우선적으로 배급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배급과정에서 식량권에 미치는 부패행위는 주로 횡령이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횡령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인과관계와 간접적 인과관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직접적 인과관계로서 식량 배급 체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횡령은 식량권(가용성,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식량 수확 후 분배과정에서 식량을 가로채는 부패행위이다. 특히 협동농장에서 간부들이 담합하여 쌀과 같은 주곡을 횡령하는 부패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식량 수매과정에서 수매원과 협동농장 간부 사이의 담합과 흥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패행위이다. 예를 들어 양정국 관리는 뇌물수수와 장부조작이라는 이중적 부패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량이 빼돌려지는 다른 형태의 부패행위를 살펴보면 소속 기관의 관장 영역에 있는 식량, 석탄 등의 수급과정에서 관료 자신이 자금을 투자해서 물자를 확보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식량 수급과정에서의 횡령은

1차적으로 식량의 가용성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식량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차별과 경제적 접근성의 수준을 악화시키게 된다. 횡령을 통해 빼돌려진 식량만큼 높은 시장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므로 북한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경제적 접근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구금시설에서의 부패행위가 수감자들의 식량권을 저해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이 집결소에 식량을 배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업지를 할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업지 경작에 집결소 수감자들이 동원되는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은 집결소 운영을 위해 활용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결소를 관리하는 보안원들이 생산물을 많이 사취하고 있다.

셋째, 간접적 인과관계로서 식량 구득에 할당될 수 있는 자원의 왜곡된 배분은 식량권(가용성, 접근성)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구체적인 부패행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식량 생산과정에서 비료나 사료 등을 빼돌림으로써 협동농장의 식량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넷째, 장마당 단속이 주민들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원격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 주민들은 장마당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단속될 경우 벌금을 내게 된다. 장마당 단속과정에서 상품에 따라 벌금 금액의 차등이 있다.

일반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군대 내에서도 식량 배급과정에서 횡령 등 부패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군대 내 식량 배급과정에서의 부패행위는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식량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식량을 공급했다고 해서 군인들 대부분이 넉넉히 배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는 군량미 공급과정에서의 부패행위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군량미 분배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군대 내 분배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복무 지역, 군종 등에 따라 군 내부에서도 식량에 대한 접근은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식량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북한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북한당국도 횡령 등 군대 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관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식량을 둘러싼 부패행위에 대해 김정일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소규모 단위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군량미 횡령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패행위로 인한 군인들의 식량권 침해는 일반주민들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즉 군인들은 자신들의 식량 가용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를 보충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일반주민의 식량을 절취함으로써 군대 내 부패행위는 일반주민의 식량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군에 의한 농작물 침해 행위이다. 특히 군인들이 야외훈련을 나가 식량이 부족해 인근 민가의 농작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있다. 둘째, 생활조건이 어렵다는 구실로 주민들의 식량이나 가축을 도적질 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군에 배급되는 식량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부패행위가 선군정치와 맞물려 일반주민들의 식량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부패와 교육권

북한에서 현재 교육권과 관련하여 가장 성행하고 있는 부패는 뇌물을 통한 대학입학행위이다. 통일연구원이 실시하는 북한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면접조사에 응하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돈만 있으면 대학 입학은 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력이 없어도 돈이 공부한다”고 말할 정도로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뇌물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뇌물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뇌물이 오고가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수준과 연줄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뇌물의 규모가 정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에서 대학을 입학하는 과정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와 군 제대 후 대학에 진학하는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그런데 군을 제대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개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대 부대 단위로 대학입학을 위한 인원이 할당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통하여 배정된 입학정원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할당정원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뇌물을 주고 입학할 경우 대학 입시와 관련된 관계자에게 모두 뇌물을 주어야 한다. 대학입학과 관련된 부패행위는 뇌물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뇌물을 통한 대학입학이라는 부패행위는 우선적으로 평등과 차별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차별과 경제적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뇌물이 통용되는 경우 실력이 있더라도 뇌물을 제공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하는 학생이 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뇌물행위는 자유차원의 교육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뇌물로 인해 학교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무상의무교육이지만 학부모들은 학교로부터 다양한 부담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교육권 침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교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돈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현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선생님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 가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봐달라고 뇌물사업을 하기도 한다. 교원들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교원이 원하는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대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담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생활에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다. 특히 뇌물은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의 부여 등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북한이라는 계급 사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열성자 임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뇌물을 주면 열성자나 소년단 간부 추천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 운영에 대한 부담과 교원에 대한 뇌물은 학교생활에서 차별적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차별적 결과는 교육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뇌물이 미치는 차별적 결과는 교육기회의 저하와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북한당국은 강제노동 자체를 위배하는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이러한 강제노동이라는 인권 유린도 부패행위로 인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과 무관하게 학생들의 노력동원이 있었지만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 교육 대신 노동을 시키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동원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 선생님들이 자신의 아이를 노동에서 제외시켜 준다고 한다.

#### (4) 부패와 건강권

무상치료제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실행의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및 치료의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일반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즉, 의사와 환자관계 수준에서 뇌물은 비차별이라는

인권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특히 뇌물을 주는 특정 환자에게 특별대우를 함으로써 의료의 질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뇌물수수행위는 무상치료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접근차원에서 비용이 증가됨으로써 건강권을 저해하게 된다.

그런데 의사와 환자관계 수준에서 사적 이익과 함께 병원운영이라는 조직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패행위도 파악되고 있다. 뇌물은 의사 개인적 이익이 주된 동기이지만 병원 운영상 필요라는 조직적 이익이 결합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000의 증언에 의하면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나면 항생제를 맞고 실밥도 풀어야 하고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의사선생들도 병원과 상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므로 환자들에게 호소하게 된다.

의료인과 환자관계 수준에서 치료와 무관하게 ‘생계’를 매개로 각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부패행위로서 허위 진단서 발급을 들 수 있다. 의사들은 생계유지와 부의 축적 차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부패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북한에서도 연줄을 형성하여 진료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려는 부패행위가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진료소, 인민병원, 도병원, 중앙병원 등 의료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3차, 4차 의료기관의 경우 연줄에 의해 의료의 질이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연줄이 없는 경우 연줄을 형성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양호한 3차, 4차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주민의 물리적 접근권이 제약을 받는 것은 뇌물과 인맥이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줄을 대서 뇌물을 주거나 의사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의사보다 좀 더 강한 사람한테 부탁해야 한다.

경제난으로 북한의 제약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의 부족 상황은 부패개입 여지를 증대시키고 있다. 인민위원회 보건국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므로 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고 있다. 보건국이 의약품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약품공급을 담당하는 일꾼들은 의약품공급 과정에서 의약품을 횡령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의 배급권한을 가진 의약품공급소가 그러한 권한을 악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있다. 그리고 의약품공급 과정에서 의약품을 수령하는 하급단위로 하여금 서류를 조작하게 하고 배급을 관장하는 곳에서 의약품을 사취하고 있다.

의약품공급 과정상의 부패행위는 의사와 환자관계 수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의사들도 부족한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서 장마당에서 팔거나 환자에게 돈을 받고 투약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이 개인약국에서 좋은 약과 중요한 약을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환자에게 고가로 팔아 이득을 취하고 있다. 병원에 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개인약국과 공생관계를 형성하여 이들 약국으로부터 돈을 받아 살아간다. 사적으로 판매하는 개인약국의 경우 의사가 결탁되어 있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약을 사오라고 이야기해준다. 일종의 리베이트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간부들에 대한 특혜와 이들의 직권남용에 의한 의약품공급상의 부패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부족한 의약품은 당 혹은 다른 기관의 간부들이 직위를 남용하여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부패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원되는 양질의 의약품의 경우 이러한 부패행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마.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평가

부패를 통하여 사적 이익과 조직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상이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패는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아닌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고착화시키게 된다. 부패로 인해 규칙과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를 수행할 제도화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북한주민의 인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북한에도 ‘부패 → 부절적인 거버넌스 → 인권에 대한 부정적 효과 → 부패현상 심화’라는 3각의 악순환 관계가 구조화되고 있다.

부패가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고착화시키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북한당국의 의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부패는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재정부족과 연계되면서 실행의 의무를 저해하고 있다. 물론 북한당국은 부족한 재원을 핵심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와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실행의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부패는 이러한 ‘실행의 의무’ 측면에서 북한당국의 의무를 보다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는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원칙이 북한주민에게 적용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는 2가지 차원에서 북한주

민의 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부패는 ‘엘리트와 일반주민 사이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2차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부패는 ‘일반주민들 사이의 차별’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부패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다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배급체계가 기형적으로 작동되면서 일반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면서 일정 정도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부패는 빈부격차와 결합되면서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주민들 사이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부패는 가용성, 접근성, 질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북한주민들의 사회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직권 남용, 특히 횡령행위는 일반주민들의 사회권 신장에 배정되어야 할 재원의 가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횡령 등 부패행위로 인한 가용성 저하는 교육권, 식량권, 건강권의 분야에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접근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가용성과 경제적 접근성의 저하는 전반적으로 일반주민의 사회권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취약집단이나 주변화된 집단의 사회권을 상대적으로 크게 저해하고 있다.

부패와 인권침해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직접적 침해, 간접적 침해, 원격적 침해라는 부패와 인권침해의 3가지 인과관계가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하나의 부패행위가 연쇄적으로 다른 인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부패행위는 우선적으로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적 요소이다. 그런데 부패의 동기, 통제기제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 억압이라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주민들은 사회 단속이 강화되어 중간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탈북을 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비차별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동의 자유의 경우 상대적으로 뇌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통제를 완화시키는 간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동 통제 완화는 비공식 유통경제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식량권에도 일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가 비공식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뇌물수수’라는 부패행위를 통해 사적 이익과 조직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상도 많게 나타나고 있다. 기관의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뇌물수수라는 부패행위는 그 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식량권의 가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조직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행위는 일부 구성원들의 식량권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부패현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확일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동의 자유와 처벌의 면제는 자유권에 대한 통제를 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서 볼 때 부패는 분명히 일반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불균형적 복합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불균형적 복합형태’라는 것은 부패가 부정적·긍정적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상황을 의미한다.

부패행위가 일정 정도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적 속성에 따라 긍정적 영향은 한계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체제 구축과정에서 사회와 주민에 대한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통제에 따른 영향을 무력화시키거나 완화시키려는 비용(뇌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기적으로 부패가 북한사회의 ‘자발적인 자유화’를 유도하는 간접적 효과도 내포하고 있지만 개혁·개방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등 사회권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부패행위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면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 연관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은 부패에 대해 부정적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뇌물을 공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서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실상황과 연결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실시하는 북한인권실태 조사과정에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뇌물에 대해 일상적인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뇌물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업과 같은 행위로 북한주민에게 인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뇌물을 통해 자기만 편하게 생활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심화되어도 인권인식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부패로 인해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원칙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저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 행위 확산 → 개인주의적 성향의 심화 → 인권인식의 형성에 대한 긍정적 기여'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3. 정책제언

부패행위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법치를 증진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하여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인권정책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기형적 계획경제와 통제기제 작동 속에서 자체적인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패에 대해 부정적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뇌물에 대한 인식과 인권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인권인식을 자각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뇌물을 주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할 경우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원칙을 자각하기는 어렵게 된다. 부패행위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패행위를 통한 개인주의적 성향의 심화가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보듯이 부패는 거버넌스, 법치, 인권 인식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인권 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부패가 개선활동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패와 인권을 통합된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해나가야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북한 내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 분야에서 뇌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내 부패현상이 거버넌스, 법치, 인권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 내 부패가 북한주민의 구체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적 상관관계, 간접적 상관관계, 원격적 상관관계라는 3가지 인과관계를 적용하여 파악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북인권정책을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불균형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복합적 효과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부패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패에 따른 개인주의적 성향이 인권인식의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패는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인식이 싹트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을 함양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 부패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패 자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 부패로 인해 형성된 이기적 사고와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권인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부패가 개혁·개방과 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내 부패는 열악한 거버넌스 수준을 보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혁·개방 유도를 넘어 부패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경제 교류협력과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토대를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개발협력 추진과정에서 참여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 대북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참여, 비차별, 책무성 등의 규범이 대북정책에 반영되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부패가 접근성, 책임성, 가용성, 적응성 등 기준에서 사회권 침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북한 취약계층들의 교육권 및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각종 관행과 제도를 시정해나가도록 촉구해나가야 한다. 인권과 부패를 통합된 관점에서 접근하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나가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 북한당국은 법률 및 제도적 차원에서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들에 제시된 기준을 감안하여 사회주의헌법상에 명시된 기본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저해하는 제도들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행의 자유를 규제하는 여행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출입국

관련 허가제도도 확대되어야 하며 절차도 간소화되어야 한다. 외부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처벌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원칙들을 감안하여 법률에 명시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휴대전화 및 영상매체 단속을 위해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되는 불시검열 등도 심각한 권리침해이다. 식량난 이후 만연된 부패행위가 뇌물을 주는 측이나 혹은 뇌물을 받는 측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의적인 개인권 침해의 제도 보완과 함께, 뇌물의 공여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치들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4. 기대효과

북한 내에서 부패행위는 일상화·만연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패행위는 거버넌스, 투명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불균형적 복합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불균형적 복합형태’라는 것은 부패가 부정적·긍정적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 내 부패가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 함의는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과정에서 북한 내 부패는 프로그램의 설계 및 집행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 부패상황과 거버넌스,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경우 대북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 내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인식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